

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-29호

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(PPA) 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“전력거래계약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11.

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소장

전력거래계약(PPA)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공고

1. 지원사업 목적

-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PPA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

* 추진근거 :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76조제1항제2호

2. 지원사업 개요

□ 지원내용

- 전력거래계약(제3자 또는 직접PPA) 송·배전망 이용요금*(이하 '망이용료') 지원

* 망이용료 외 기타 부대비용은 미해당, 한전 송·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름

- PPA 체결 건별로 기업 구분 및 발전소 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
구분	지원기간				지원비율
	공통사항	우대사항*		전체기간 (기본 ~ 최대)	
		저탄소 및 경제안보 품목	PPA플랫폼 활용 (저탄소 및 경제안보 품목 한정)		
중소·중견	3년(36개월)	+2년(24개월)	+2년(24개월)	3~7년	납부금액 100% (전환설비 50%)
그 외 기업	1년(12개월)			1~5년	

* 기존 공고 대비 금번에는 우대사항이 추가되어 망이용료 지원기간 확대

□ 지원대상

○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
- ① '21년 이후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제3자 PPA* 또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 PPA**를 체결한 전기사용자

* 「신·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 계약

** 「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계약

-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해 PPA 시장으로 신규 유입·전환된 발전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이전 망이용료 지원사업(이하 '종전 사업') 또는 동일 내용의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발전소와 재계약*한 전기사용자는 제외

* 종전 전기사용자의 잔여 지원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

(단, 합산설비 중 지원 이력이 있는 설비만 제외하고 신청 가능)

- PPA 계약 내 설비용량을 증설하고 전기사용자를 추가한 경우, 증설 설비의 전기공급 시작월부터 신청 가능

- ② 위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후,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「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」를 발급받은 기업(관)

□ 지원기간

○ 최초 전기공급 시작월로부터 중소·중견기업*은 36개월, 그 외 기업은 12개월간 연속 지원(우대사항 해당 시 지원기간 확대)

* 제출 마감 시점까지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

- 종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지원기간에서 기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한해 신청 가능(우대사항 적용도 동일)하며, 마지막 지원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가능(조정 불가)
- 신규 지원기업은 망이용료 청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, 최초 전기공급 시작월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지원 시작월 조정 가능

○ 우대조건

- ① 태양광 설비의 경우 저탄소모듈* (탄소배출량이 655kg·CO₂/kW 이하), 풍력 설비의 경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한 기자재**를 활용한 발전소와 계약 시 지원기간을 2년 추가 확대

*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등 발전소의 기자재 활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

** 현재 본 사업 지원대상기간(~'26.5월) 내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는 부존재하며, 대상 설비 범위 및 적용 방식은 추후 공고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

- 2종 이상 태양광 모듈을 혼용하는 경우, 모듈별 구성 비율에 무관하게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기간 연장 여부 결정

- ② 공단이 운영하는 PPA 중개플랫폼*을 통해 ①에 해당하는 발전소와 PPA 체결 시 지원기간을 2년 추가 확대(총 4년)

* RE100 PPA 중개플랫폼(www.ppa-energy.kr)

□ 지원범위

- 신규 발전소와 최초로 PPA 체결한 전기사용자(이하 '최초계약자')의 경우, 지원기간 내 납부한 망이용료 공급가액의 100%를 한도 없이 지원(부가가치세(VAT)는 미지원)

- '최초계약자'란 발전소의 사용전검사 확인증 상 검사일 이후 발생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최초로 계약(구매 또는 사용)한 전기사용자를 의미

* 단, PPA 신고 및 승인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안 한전 등에 전력만 판매한 경우는 최초계약자로 인정

- 금번 공고부터 최초계약자 인정 기준을 변경(상업운전 개시일 → 사용전검사일)함에 따라, 기지급된 발전소의 남은 개월 수는 기존 공고 기준인 상업운전 개시일에 따라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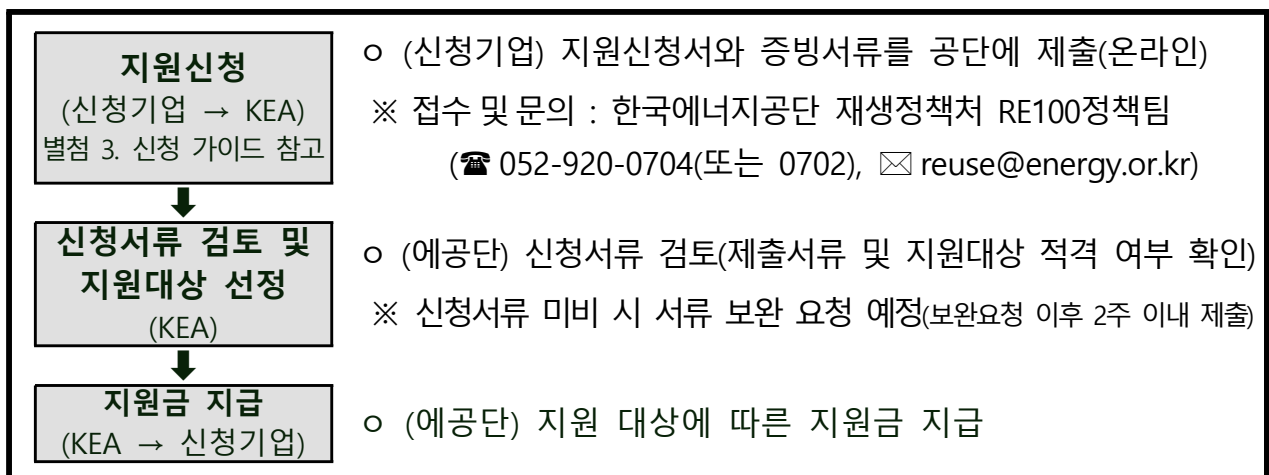
- 기존 발전소 활용(RPS, FIT 등→PPA 전환) 등 최초계약자가 아닌 경우, 지원기간 내 납부한 망이용료 공급가액의 50%로 제한하여 지원

□ 지원요건

- PPA를 체결한 발전소별로 최초계약자 1개사(1:N계약 시, N개사)에 한정하여 지원하며, 지원 도중 전기사용자 변경은 불가*
 - * 동 공고를 통한 접수 마감 후에 지원 이력이 발생한 발전소(발전사업허가 기준)과 재계약한 전기사용자는 종전 잔여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불가
- 파산, 부도, 계약파기 등으로 발전소의 계약자(전기사용자)가 변경될 시 종전 계약자(전기사용자)가 지원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 - * 합산설비 중 이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
- 동일 발전소에 설비용량이 추가된 경우, 증설 용량은 종전 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
 - * 변경 계약서 등 용량 변경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(증설 용량 비율에 따라 지급)
- 신청서 제출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시,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

3. 2026년 지원사업 안내

- (지원대상기간) '26.5월분까지 신청 가능
- (신청기간) 공고일로부터 '26.8.31.(월) 18:00까지
- (지급안내) 요건 충족 시 모든 신청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 소진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지급
- (지원절차)



□ 필수 증빙서류(각 1부씩)

No	증빙서류*	비고
1	[별첨1] 지원사업 신청서	-
2	[별첨2] 개인(기업)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-
3	[첨부] 발전소별 신청 정보 내역서	-
4	법인등기부등본	-
5	사업자등록증	• PPA를 체결한 전기사용장소 기준 제출
6	법인인감증명서	• 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
7	사용전검사 확인증	• 발전소별로 제출 필요
8	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	• PPA 실적 확인용
9	전기요금 청구서	• 망이용료 등의 세부 청구 내역이 기재된 청구서
10	납부 내역서	• 세금계산서, 영수증, 입금확인증 등
11	사업자 통장 사본	-
12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• 지원금 지급 시기에 별도 요청 예정
13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	• 중소, 중견기업 해당 시
14	(태양광)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(풍력)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생산 제품 증빙 서류	• 우대조건 해당 시
15	기타 망이용료와 관련된 증명서류**	-

* 제출 마감일('26.8.31, 18:00)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필수

** 기타 망이용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등
객관적 확인이 어려울 시 지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

○ 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(우편 접수 불가)

* 이메일 접수 상태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가능

○ (접 수 처)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RE100정책팀

○ (연 락 처) ☎ 052-920-0704(또는 0702) / ✉ reuse@energy.or.kr

4. 유의 사항

□ 자격 및 적정성

- 망이용료 납부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, 추후 동 지원사업 공고 시 전기공급 시작월(p.2 지원기간 참조)부터 신청 가능
-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등 지원 부적합으로 판단된 경우*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* 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 계약서 등의 허위도장 날인, 청구서 및 납부 내역서 등 제출서류 위·변조, 법규·공고·규정 미준수 등
- PPA 체결 건별 보완이 가능(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)하며, 보완 요청 기간(요청일로부터 2주) 내 미제출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지원금 지급 이후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시 환수 조치 가능

□ 중복지원 불가

- 타 기관, 지자체 및 정부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환수 조치

□ 기타

- 지원신청 금액은 납부한 망이용료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급하며, 최종 산출액 기준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

개인(기업) 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

한국에너지공단은 「전력거래계약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(기업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. 개인(기업) 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① 개인(기업) 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는 「전력거래계약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·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·이용됩니다.

② 수집·이용할 개인(기업)정보의 항목

전기사용자(신청기업) 정보, 재생에너지 발전(공급)사 정보, PPA 계약 및 망이용료 지원신청 정보

③ 개인(기업)법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개인(기업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(기업)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단, 지원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「전력거래계약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」 신청 시의 이력 관리 등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 기간은 수집일로부터 5년입니다.

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위 개인(기업)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「전력거래계약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」의 참여 및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
⑥ 한국에너지공단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·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?

대표자 확인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
담당자 확인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

2. 개인(기업)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① 제공받는 자

기후에너지환경부, 한국에너지공단, 용역수행기관

② 제공의 목적

「전력거래계약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·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.

③ 제공할 개인(기업) 정보

전기사용자(신청기업) 정보, 재생에너지 발전(공급)사 정보, PPA 계약 및 망이용료 지원신청 정보

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위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되며
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
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위 개인(기업)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「전력거래계약 송·배전망 이용요금
지원사업」의 참여 및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
⑥ 한국에너지공단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?

대표자 확인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
담당자 확인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

		년	월	일
기업명 :	대표자명 :	(인)		
	담당자명 :	(인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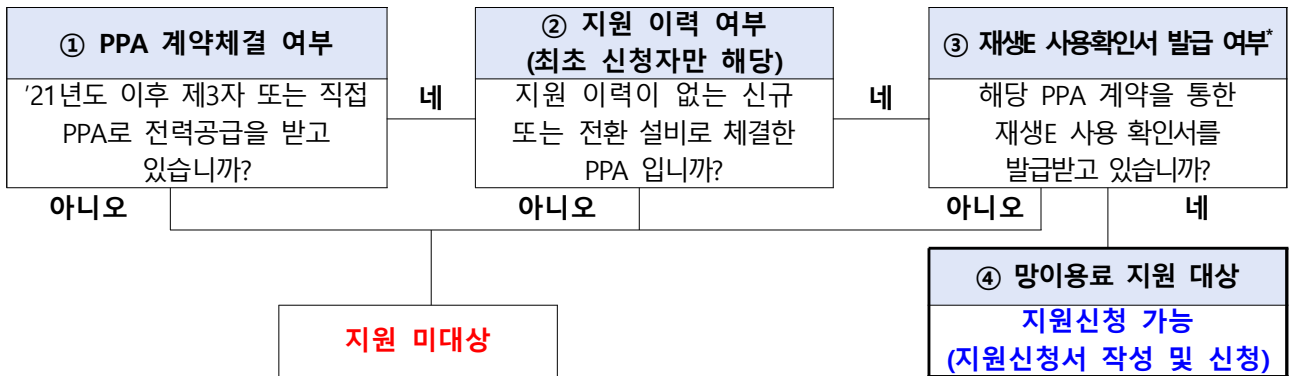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

'26년 전력거래계약(PPA)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

1. PPA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

□ (지원대상 여부) 제3자 PPA* 또는 직접 PPA**를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통해 재생E 사용 확인서***를 발급받고 있는 전기사용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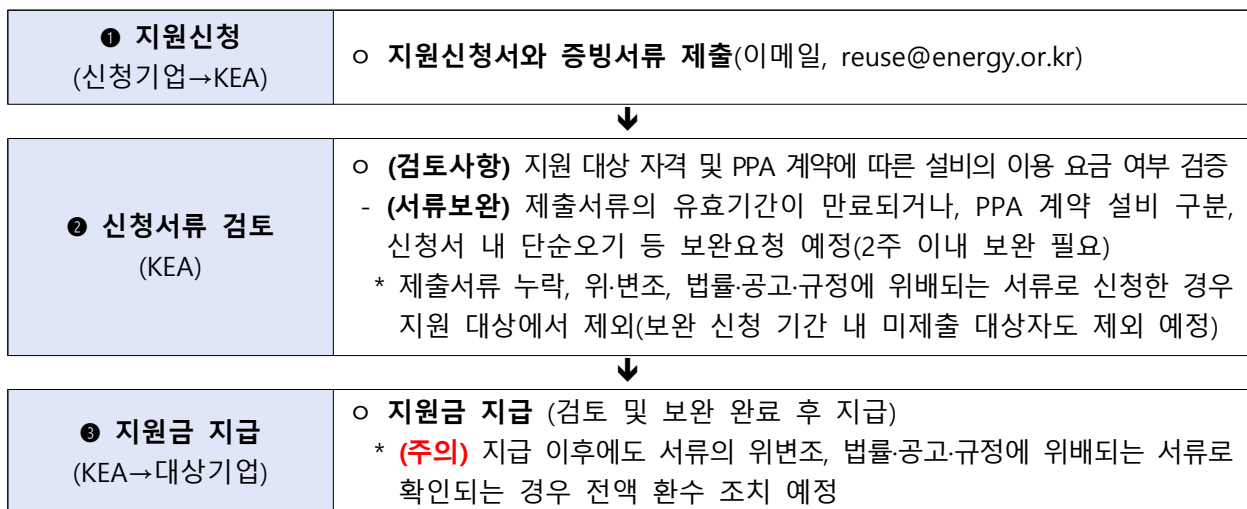
- 1) 「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 계약
- 2) 「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계약
- 3)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



* 자세한 사항은 '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'(nr.energy.or.kr/RE/CST/login.do)에 접속하셔서 PPA 계약 등록, 실적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 PPA 송·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신청 방법

□ (지원절차)



① (지원신청)

① 재생E 사용 실적 등록	② 제출서류 준비	③ 신청서 작성	④ 지원신청
지원 대상 기간*에 따른 재생E 사용 실적 등록 및 확인서 발급	서류 검토기간 내 유효한 서류 구비 (서류별 진위여부 검토 예정)	[별첨1] 신청서 (최초·변경 신청자 해당) [별첨2] 정보 수집·이용· 제공 동의서 작성	공고문 상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로 접수 (유선상 접수 확인 가능)

* 신청자가 망이용료를 납부한 기간이 지원대상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

※ 예시 : (지원 대상 기간) ~'25.8월분까지, (납부실적) '24.11월~'25.4월(6개월분) →

**'24.11~25.4월(6개월분)까지만 지원신청 가능(단, 전력 공급일이 해당 월 16일 이후 체결된
경우 지원 시작일은 다음 월 1일부터 산정함)**

①-① (재생E 사용 실적 등록 방법)

No.	홈페이지 화면	설명
1		○ 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*에서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* nr.energy.or.kr/RE/CST/login.do • 재생E 사용 확인기업으로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입절차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입 선행
2		① 지원신청 대상의 PPA 계약(제3자 또는 직접 PPA) 등록 여부 확인 • 실적제출> 제3자PPA 또는 직접 PPA> 계약등록 탭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 ② PPA 계약 정보가 없는 경우 계약서 등록 • 계약 등록 후 재생E 사용 확인서 발급 필요
3		① 지원신청 대상의 PPA 실적 제출 여부 확인 ② 실적 등록 정보가 없는 경우 실적 제출 ③ 지원 기간 내 PPA 계약에 따른 재생E 사용 기간 및 실적 입력 •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망이용료 납부 실적을 고려하여 실적 등록 필요 ④ 공단 시스템관리자 실적 승인 후, 재생E 사용 확인서 발급 및 제출 • 제3자/직접 PPA>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>발급 신청>실적 선택>등록하기

①-② (제출서류 준비사항)

No.	필수 제출서류	세부 내용
1	[별첨1] 지원사업 신청서	○ PPA 계약 설비별 신청서 작성 필요 • (설비구분) PPA 계약 발전소 중 기존 발전소*를 활용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구분하여 신청 - 계약한 발전소의 PPA 계약 이력 및 해당 발전소로부터 타 기업의 망이용료 지원 수혜 이력을 확인한 후 최초 계약인 경우만 신청 가능 * RPS, FIT 등의 설비로, PPA 계약 체결 이전 전력거래 실적이 있는 설비(망이용료 50% 지원 대상, 기존설비) ※ (예시) 기존설비* 300kW, 신규설비 800kW를 합산하여 PPA 계약을 체결한 경우 - (신청서) ①300kW 설비(50% 지원), ②800kW 설비(100% 지원) 2개의 신청서로 구분하여 신청 - 단, 기존설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규설비 기준(100% 지원)으로 신청(보완요청 가능) • (증설설비) PPA 계약체결 이후 종전 계약 내 설비용량이 추가되어 계약변경이 된 경우 구분하여 신청 * PPA 변경 계약서 등으로 용량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※ (예시) 종전계약 설비용량이 1,100kW에서 1,500kW 설비(1,100kW 유지, 400kW 증설)로 PPA 변경 계약 후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 - (신청서) ①1,100kW 최초 계약설비, ②400kW 증설 설비를 합산하여 신청 - 단, 추가 증설되는 설비가 기존 설비를 활용한 경우 신청서를 구분하여 신청(망이용료 50% 지원 예정) • (주의) 합산설비의 경우 신청서 내용 중 청구요금 작성 시 망이용료 고지서상 설비별 공급량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을 확인하여 작성
2	[별첨2] 개인(기업)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○ PPA 계약서, 계약 내 정보 등을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필요 • (주의) 미동의 시 서류의 위·변조 사항 확인 등이 불가하여 지원금 지급 불가능

No.	필수 제출서류	세부 내용
3	[첨부] 발전소별 신청 정보 내역서	○ 망이용료를 신청하는 발전소별 정보 제출 필요 • (주의) 양식 내 가이드라인 참고
4	법인등기부 등본	○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용으로 제출 필요 • (주의) 열람용 제출,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 등 검토가 불가하여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5	사업자등록증	○ PPA 계약서에 따른 전기 사용장소가 법인소유의 사업장 여부 확인 필요 • (주의) PPA 계약서 상 전기사용장소가 본사가 아닌 타 사업장인 경우 본사,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필요(보완요청 가능)
6	법인인감증명서, (해당시) 사용인감계	○ PPA 계약서 등 법인인감의 진위여부 확인 필요 • (주의) ①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②제출 서류 중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 사용인감계도 제출 필수
7	사용전검사 확인증	○ 망이용료를 신청하는 발전소별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 필요 • (주의) 사용전검사일 확인이 어려울 시, 기존설비 기준을 적용하여 망이용료 납부액의 50% 지원
8	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	○ PPA 망이용료 청구·납부가 완료된 기간까지의 재생E 사용 확인서 제출 필요 • (주의) 재생E 사용 확인서 실적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대상이나, 제출마감일 이전까지 재생E 사용 실적을 등록하여 보완 기간 내 제출 시, 실적으로 인정 가능

No.	필수 제출서류	세부 내용
9	송·배전망 이용요금 청구서	○ 지원대상기간 내 한국전력공사의 송·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청구서 제출 필요 • (주의) 월별 청구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직접 PPA의 경우 재생E전기공급사업자가 청구·고지하고 있으므로, 해당 청구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필요
10	납부내역 증빙자료	○ 망이용료 청구에 따른 입금내역 증빙자료 제출 필요 • (증빙자료) ①세금계산서*와 ②거래계좌의 이체확인증** * 한전 또는 재생E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기요금 납부내역서(제3자 PPA)로 제출 필수 ** 망이용요금 청구금액이 이체된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 등 • (주의) 전력대금, 부가정산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이체한 경우, 항목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필수
11	사업자 통장 사본	○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통장 사본 제출 필요
12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○ 지원금 지출 서류로 활용 예정으로 제출 필요 • 홈텍스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• (주의) 지원금 지급 시기에 제출 요청 예정
13	(해당시)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	○ 지원 기간 산정 구분을 위해 중소/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(중소·중견 3년) • (중소기업 확인서)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• (중견기업 확인서)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• (주의)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 제출이 필수, 미제출 시 지원금 산출 기준은 대기업 기준 적용 예정
14	(해당시) (太)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, (風) 공급망 안전화 선도사업자의 생산 제품 증빙 서류	○ 우대사항 조건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• '21.5월 이후 개정된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(사용 목적, 신청자명, 허가번호 등 포함)만 인정

①-③ (신청서 작성)

신청서 양식(변경신청서 양식 동일)				설명																
PPA계약 및 망이용료 지원신청 정보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①PPA 계약기간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00년 0월 ~ 00년 0월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②PPA 방식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 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(제3자 PPA) ☐ 직접전력거래계약(직접 PPA) </td> </tr> <tr> <td>③PPA 최초 계약자 여부</td> <td>예 / 아니오</td> <td>④지원사업 최초 신청 여부</td> <td>예 / 아니오</td> </tr> <tr> <td>⑤망이용료 지원요청 기간</td> <td>00년 0월 ~ 00년 0월</td> <td>⑥지원금 청구금액</td> <td>000,0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⑦사업장의 한전 고객번호</td> <td>00 0000 0000</td> <td>⑧타 지원사업 중복 여부</td> <td>예 / 아니오</td> </tr> </table>				①PPA 계약기간	00년 0월 ~ 00년 0월	②PPA 방식	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(제3자 PPA) ☐ 직접전력거래계약(직접 PPA)	③PPA 최초 계약자 여부	예 / 아니오	④지원사업 최초 신청 여부	예 / 아니오	⑤망이용료 지원요청 기간	00년 0월 ~ 00년 0월	⑥지원금 청구금액	000,000,000원	⑦사업장의 한전 고객번호	00 0000 0000	⑧타 지원사업 중복 여부	예 / 아니오	① (계약기간) PPA 계약서 내 계약기간 기준으로 작성 - 동일 PPA 계약 건 중 계약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과 변경된 계약기간 모두 작성 ② (PPA 방식) 신청자가 체결한 PPA 방식을 확인하여 표시 ③ (최초계약 여부) 기존 발전소(RPS, FIT)을 활용하여 PPA 계약 체결한 경우 '아니오' 이외 '예'로 표시 - 신규 설치한 설비로 PPA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'예'로 표시 (주의) PPA 신고 및 승인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한전 등에 전력만 판매한 경우도 '예'로 표시 - 종전 전기사용자가 파산, 부도, 계약 파기 등으로 현재 PPA 계약자가 신청자로 변경된 경우 '아니오'로 표시 (주의) 종전의 전기사용자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④ (최초신청여부) 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최초로 참여하는 경우 '예', '26년 5월 이전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'아니오'로 표시 (주의) 중복지원 요청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지급 및 사실 관계 확인 예정 ⑤ (지원요청기간) 지원대상기간 중 망이용료를 납부한 기간 작성 ⑥ (청구금액) 지원대상기간 중 납부한 망이용료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금 청구금액 작성(원단위 절사) ⑦ (고객번호) 전기판매사업자가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 작성 ⑧ (지원중복여부) 타 지원사업에서 망이용료를 지원받은 경우 '예', 동 사업을 통해 최초 또는 지원받은 경우 '아니오' 표시 (주의)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중복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, 전액 환수 조치
①PPA 계약기간	00년 0월 ~ 00년 0월	②PPA 방식	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(제3자 PPA) ☐ 직접전력거래계약(직접 PPA)																	
③PPA 최초 계약자 여부	예 / 아니오	④지원사업 최초 신청 여부	예 / 아니오																	
⑤망이용료 지원요청 기간	00년 0월 ~ 00년 0월	⑥지원금 청구금액	000,000,000원																	
⑦사업장의 한전 고객번호	00 0000 0000	⑧타 지원사업 중복 여부	예 / 아니오																	

3. 기타 안내 사항

☐ (지원대상 제외) ①서류 누락·미제출자(보완요청 기간 내 미제출도 포함),
②위·변조된 서류 제출자, ③타 지원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자

☐ (서류보완) PPA 체결 건별 보완이 가능(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)하며,
보완요청 기간(요청일로부터 2주) 내 미제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*

* 단,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거나, 발전사 또는 중개사업자(한전, 재생E
전기공급사업자)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전 보완요청 기간 연장 여부 논의 필수

☐ (지원기간) 망이용료 납부 이전 지원 신청 건은 지원 불가 대상이며,
추후 지원사업 연장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

☐ (지원금 계산) 납부한 망이용료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급하며,
최종 산출액* 기준 원단위 절사 금액 지급

* (예시) 공급가액 1,567,857원 납부 → (기존설비, 50%) 783,920원, (신규설비, 100%) 1,567,850원 지급

** 국고금 관리법 제47조(국고금의 끝수 계산)을 준용하여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

☐ (환수조치)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(위·변조, 법률위반 사항)
또는 타 기관,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
내역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가능

☐ (변경신청) 종전 사업 참여 이후 기업규모 변경* 또는 종전 사업
참여* 시 미청구 금액이 있는 경우 신청서 내 지원금 청구 금액에
합산하여 표기 필수

* 기업규모가 대기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,
이전 사업 참여에 따른 누적 지원 기간이 본 공고의 지원 기간을 초과한 경우 미지급